



2024년  
인권영향평가 최종보고서

2024. 12. 20.

동북아역사재단

# 제 출 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귀하

이 보고서를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12. 20.

한국경영인증원

# 목 차

제1장. 인권경영 환경분석 및 현황 .....	1
1. 인권경영 정책 동향 .....	2
2. 인권경영 구축 동향 .....	7
3. 동북아역사재단 인권경영 현황 .....	11
제2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	14
1. 인권영향평가 실시 개요 .....	15
2. 인권영향평가 사업 선정 .....	21
3. 인권영향평가 지표 구성 .....	22
제3장.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분석 .....	25
1. 교육연수팀 운영사업 .....	26
2. 콘텐츠 운영사업 .....	31
제4장. 인권경영 주요 개선 과제 .....	37

# 제1장

---

## 인권경영 환경분석 및 현황

# 1 인권경영 정책 동향

## [가] 인권관련 국제적 기준 · 제도

- 1970년대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권경영 관련 연구 ·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국제사회 전반에 중요성 및 영향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

[인권경영 관련 국제적 기준 요약]

구분	내용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197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 있는 경영활동에 대한 자발적 원칙과 기준 제시</li> <li>- 한국 등 OECD 회원국 소속의 다국적기업 적용 권고</li> <li>- ‘인권’ 조항에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에 대하여 국제적 인권의 프레임워크, 국제적 인권 의무 및 관련법, 기업 내 권고사항 등 제시</li> </ul>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3자선언 (197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적기업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li> <li>- 일반정책, 고용, 훈련, 노동조건·생활조건, 노사관계 등 5개 분야에서 노동인권에 관한 상세한 지침 제공</li> </ul>
노동에 있어서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199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국제규범</li> <li>-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강제노동의 폐지, 아동노동의 철폐, 작업장 차별의 금지 등 8개 핵심 협약 존중·실현 의무 명확히 함.</li> </ul>
UN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19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주창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 및 10대 원칙으로 나누어 UN이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설</li> <li>- 세계인권선언, 노동에 있어서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 UN 부패방지협약 등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1.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li> <li>· 원칙 2. 사람이 인권 유린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li> <li>· 원칙 3.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한다.</li> <li>·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반드시 철폐한다.</li> <li>· 원칙 5. 아동노동에 대한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폐지를 수행한다.</li> <li>· 원칙 6. 고용 및 직업에서의 어떠한 차별도 철폐한다.</li> <li>· 원칙 7.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원한다.</li> <li>· 원칙 8. 환경 책임을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한다.</li> </ul> </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9.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장려한다.</li> <li>· 원칙 10. 기업은 강요와 뇌물 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해야 한다.</li> </ul>
<p>GRI 지속가능 경영보고 가이드라인 (200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의 경제·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 보고</li> <li>-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보고 기준으로 활용</li> <li>- 윤리적, 합법적 행위에 대한 조직 내외부 자문 매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영향평가 검토 대상 사업장</li> <li>·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교육</li> <li>· 인권 심사 시행을 포함한 계약 체결</li> <li>· 동등한 기회 제공, 차별금지</li> <li>· 아동노동, 강제 노동 금지 정보 보고</li> </ul> </li> </ul>
<p>ISO 26000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201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책임에 대한 지침’으로, 기업, 정부, 소비자, 노동계, NGO 및 서비스 등의 6대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 제시</li> <li>- 7대 핵심 주제로 환경, 인권, 노동 관행, 지배구조,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로 구분하여 구체적 기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의 윤리적 행동 강화</li> <li>· 인권영향평가 및 리스크 대응</li> <li>· 인권침해 구제제도 실행</li> <li>· 여성 등 취약 집단 차별금지, 노동 기본권리 보호 강조</li> </ul> </li> </ul>
<p>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2011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UN인권이사회에서 이행지침 최종 승인, 2014년 초국적 기업에 대해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에 대한 실무그룹 구성</li> <li>- 기업과 인권에 대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글로벌 행동기준 제시</li> <li>- 보호, 존중, 구제 3대 축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보호 의무</li> <li>·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li> <li>· 구제에 대한 접근성</li> </ul> </li> <li>- 인권선언, 리스크 평가, 정보공개 권고</li> <li>- 각 항목별로 31개의 기본지침과 운영지침 제공</li> </ul>
<p>EU 환경·인권실사 의무화법 (2024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회원국 전체에 보다 일관되고 포괄적인 법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업실사 및 기업책임에 관한 지침 채택</li> <li>- 기업 공급망 전체의 환경·인권보호 등 현황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여하고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공개하는 법안 도입</li> <li>- 관보 게재·발효 시 EU 회원국의 관련 국내법 제정 의무 발생 (2027년~2029년 적용 개시 예상)</li> </ul>

## [나] 인권경영에 관한 정부 동향

-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과 같은 국제적 규범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를 발간 후 인권에 관한 정책 수립·추진

### [인권경영 관련 국내 정부 동향]

구분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인권경영 문화 확산 및 자발적 인권경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발간(2014.1.8.)</li> <li>-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발간 및 인권경영 실행 권고(2018.8.29.)</li> <li>· 1단계 : 인권경영 체제 구축</li> <li>· 2단계 : 인권영향평가 실시</li> <li>· 3단계 :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li> <li>· 4단계 : 구체절차 제공</li> <li>-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실사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수립(2022.7.13.)</li> </ul>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제3차 기본계획 수립·공표(2018.8.7.)</li> <li>- 인권경영 표준지침 개발연구 보고서를 통해 인권경영 체제구축 3단계 로드맵과 인권실사 과정과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2019년)</li> <li>-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추어 ‘기업과 인권’ 을 단계별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발간(2021.12.23.)</li> <li>- 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법제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1.12.28.)</li> <li>-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제4차 기본계획 수립·공표(2024.3.)</li> </ul>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발표(2020.1.15.)</li> <li>-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국민체감형 평가지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발표하여 윤리경영 배점을 3→5점으로 확대(2021.8.31.)</li> </ul>

구분	내용
국무조정실	- 공공분야의 갑질부터 선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수립(2018.7.5.)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2019.2.18.)
고용노동부	- 민간기관 내에서 근로자 등에 대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수립(2018.7.18.) -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2019.2.21.)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사항 추가된 「근로기준법」 시행(2019.7.16.)
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 가이드라인 발표(2020.6.)* ·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소비자·협력사와 더욱 공정하게 거래 하도록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 · 공정 경제 기반 조성을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에게 ESG경영의 주요 핵심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K-ESG 가이드라인 발표(2021.12.1.) · 정보공시(P),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4개 영역, 27개 범주, 61개 기본 진단 항목으로 구성되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

\*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 유형(행정안전부)



거래관계	주요내용	모범거래모델 유형
① 소비자 또는 임차인과의 거래	·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일반 국민과 맺는 거래관계	I. 對 국민 거래관행 개선
② 협력업체와의 거래	· 공공사업 발주자와의 일차적인 거래관계 · 공동계약 등 협력업체	II. 對 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③ 협력업체-민간기업 간 거래	· 지방공기업이 최종 구매자인 계약관계(value chain)에서 직·간접 거래당사자인 민간기업(하도급)	III. 민간기업 불공정 행위 차단
④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 지방공기업 스스로 공정거래원칙을 준수하는 내부준칙 · 지방계약법 등 법제도적인 측면	IV.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 [다] 정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국내외 정책과 제도는 기업에 인권경영 체제 구축, 인권경영 추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은 사회 전반의 환경변화에 따라 인권경영 체제 점검을 통한 인권경영 내재화 및 고도화 전략 수립 필요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글로벌 정책 및 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강조</li> <li>- 인권영향평가 및 리스크 대응 강조</li> <li>- 인권침해 구제제도 실행 권고</li> <li>- 정보공개 권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인권경영 활동이 취약한 협력 회사 등 공급망 관리, 환경권, 지역주민 보호 등 확산방안 모색 필요</li> <li>- 구제제도 체계 점검 및 개선, 홍보</li> <li>- 정보보호 대상과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기준 필요</li> </ul>
정부 정책 및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li> <li>-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른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행 권고</li> <li>- 갑질, 성희롱, 괴롭힘, 채용 비리 등 인권침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권고</li> <li>- 정보공개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활동 계획 수립 및 홍보 필요</li> <li>- 내부 규정 및 지침 내 인권경영 위원회, 인권영향 평가, 구제 절차 관련 체계, 세부 계획 및 내용 정립 필요</li> <li>- 인권침해 사례 및 이슈 등을 고려하여 기관운영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시행 필요</li> <li>- 인권경영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 공개, 홍보 필요</li> <li>- 인권경영 정보공개 기준 마련</li> </ul>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시행(「근로기준법」 내)으로 근로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li> <li>-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구제 조치 강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재발 방지 교육 필요</li> <li>- 인권침해 구제 절차 수립 및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대응 매뉴얼 등 마련 필요</li> </ul>

## 2 인권경영 구축 동향

### [가] 인권경영 실시

#### □ 해외 · 민간기업

- 프랑스는 2017년 기업 인권 모니터링 의무법을 제정하여 5,00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한 '인권실사'를 법제화했고 노동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인권에 대한 기업실사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
- 영국의 경우, 2015년 현대판 노예법이 발효되어 회사 또는 공급망에서 노예제 및 인신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함.
- 독일은 2023년 공급망 실사법을 통해 기업들은 자신의 사업영역 및 직·간접적 공급업체에 인권 및 환경(토양, 수질 오염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의무 위반의 경우 행정당국은 행정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은 기업활동으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실현하는 가교로서 공공기관의 공급망에 포함된 민간기업으로 인권존중 책임 확산과 글로벌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
  - 시범 적용을 지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등 비재무공시와 연계하여 대외 정보를 공개하는 단계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적용	▶ 인권경영 추진체제 구축	▶ 사회적 가치실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위원회 지정 시범 적용기관으로서 인권 경영 체제 구축 전 과정 수행</li> <li>▷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진흥원, 부산항만진흥원, 전남 개발진흥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부자문을 통한 체제 구축 진행</li> <li>▷ 한국교육개발원, KIET, KIC, KISD, aT, EX, KOTRA, 철도시설공단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사회적 가치 체계'에 인권경영 반영, CSR 보고서 형태로 대외 공개</li> <li>▷ aT, 중소기업진흥공단, 한전KDN, 국민체육진흥공단 등</li> </ul>

- 법무부는 2019년 인권경영 표준지침 개발연구 보고서를 통해 인권경영 체계구축 3단계 로드맵과 인권실사의 과정과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인권경영 체계구축 단계별 로드맵]

구분	인권경영 1단계	인권경영 2단계	인권경영 3단계	
인권경영 체계구축	인권경영위원회 및 실무부서, 워킹그룹	기존 조직 및 인력활용	인권경영 담당자 지정 인권경영 워킹그룹 활용	
	인권경영선언	간소한 형식의 인권경영선언 작성	인권경영선언 작성	세부주제별 인권경영 내부지침 작성
	인권정보공시 및 교육	부정적 인권영향이 심대한 사업활동에 대해 정보를 공개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인권경영 내용 포함	인권경영보고서 별도 작성 (영문 포함)
	영향권 내 확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인권 관련 내용 포함	임직원 전체에 대한 사내 인권교육 실시	인권리스크 직군에 속한 임직원들에 대한 전문 교육 실시
	영향권 내 확산	거래 관계가 있는 대기업, 협력업체 및 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자회사 및 협력회사에 인권경영 확산 노력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인권경영 확산 노력
인권실사 담당자 및 실사팀 구성	기존 조직의 실무자가 인권실사 담당자 겸임	인권경영 부서 내에 인권실사 담당자 지정	인권경영 부서 내에 실사 전담팀 구성	
인권실사	인권실사 계획 수립	실사 담당자 자체의 기초조사. 가장 시급한 영역과 대상에 집중.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작성한 체크리스트 활용	주요부서 및 해외사업장과의 공동 기초조사. 시급한 영역과 대상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의 심화 작성	광범위한 기초조사 실행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심층면담.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심도있는 체크리스트 작성
	인권리스크 식별평가	부서담당자와 실사 담당자의 식별평가 중심으로 운영	식별 평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경청, 부정적 영향의 원인 분석	식별평가와 더불어 부정적 영향의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 인권전문가 자문요청
	기업 기능과 절차에 통합	부정적 영향 예방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조치 마련	조직 리더십과 조직문화 개선 등 포괄적인 대응조치 마련	사업관계자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으로 확장. 독립적인 전문가의 조언요청
	모니터링과 효과성 추적	대응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주요지표선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 수집	다양한 양적질적 지표 선정. 인권개선효과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주요 이해관계자와 소통	인권리스크의 잠재적 피해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독자적인 보고서 출간, 진출국 정부, 기업, 시민과의 소통으로 확장
구제 조치	내부규정 제정	간소한 형식의 내부규정 마련	내부규정 제정 및 발표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내부규정 확산 노력
	인권침해구제 위원회 도입	감사팀 등을 통한 내부적 해결	내부 중심의 인권구제위원회 구성. 외부 인사 포함도 고려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인권구제위원회 구성
	절차 이행	기존 체제 활용	필요한 인력 충원 및 자원 배분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이행 노력
	절차 수립과 이행 보고서 작성 및 보고	고위 경영진 보고	고위 경영진 보고 및 발표	고위 경영진과 글로벌 경영진 보고 및 발표

## (나) 공공기관 인권경영 시스템

### □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권경영 선언문을 제정하여 인권경영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 전담부서 설치가 바람직하지만 기관 사정에 따라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인권경영 전담자로 임명할 수 있음.
- 인권경영 실행지침(규정) 제정
  - 인권경영 실행목적, 체계, 위원회 구성과 운영, 영향평가, 실태조사, 이행사항, 구제조치를 포함하는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제정
- 인권경영 위원회 구성
  - 기관 인권경영 정책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 역할로 최고경영진 포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

###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선언문을 작성하고 인권경영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인권경영 선언문을 확정하여 공표함.

- 인권경영 선언문 작성
  - 기관 인권경영 현황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선언문 초안 작성
  - 인권경영위원회 검토 요청
  - 외부전문가, 자문기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 기관 공통 포함내용
    - 지지하는 인권기준, 비차별 또는 차별금지 원칙
    -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강제 및 아동 노동금지 등 노동권
    - 반부패, 투명경영, 실천 및 점검 의무
    - 직원, 소비자, 공급망,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 피해자 구제
  - 업종에 따라 특정 인권 이슈 강조

## □ 인권경영 지침 및 현장

○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함.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경영일반원칙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5장 인권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li> <li>• 정의</li> <li>• 적용범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상의 차별금지</li> <li>•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li> <li>•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li> <li>• 안전 및 보건</li> <li>•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li> <li>• 지역주민인권보호</li> <li>• 환경권 보장</li> <li>• 고객인권보호</li> <li>• 구제조치의 노력</li> <li>• 이해관계자와의 소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현장</li> <li>• 전담조직</li> <li>• 인권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 및 기능</li> <li>• 구성</li> <li>• 소집 및 회의</li> <li>• 수당</li> <li>• 의견청취</li> <li>• 비밀누설금지</li> <li>• 위원 위촉 해체</li> <li>• 이익충돌회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영향평가 실시</li> </ul>
				<b>제6장 인권의 구제</b>

## □ 구제절차

○ 기관에 가장 적절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기관 내 기존 고충처리 제도와 연계하여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구제절차 수립 및 시행

<input type="checkbox"/>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파악한 인권 리스크와 인권침해 이슈를 구제절차 형식에 반영</li> </ul>
<input type="checkbox"/> 구제절차 수립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구제절차로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또는 ‘인권옴부즈맨’ 활용을 권장하며, 인권경영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구제기구로 활용하거나 산하에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를 둘 수 있음.</li> <li>• 구제기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지원을 받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li> <li>• 전담자 지정이 바람직하나, 유사 업무 담당자를 인권옴부즈맨으로 지정 가능</li> <li>• 구제절차 운영에 관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수립(내부지침, 외부구제절차)</li> <li>• 구제절차 이용안내, 진정인의 개인정보보호조치, 장애인 접근성 향상, 구제절차 교육방안 마련</li> <li>• 진정이 접수된 경우 구제 매뉴얼,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 시행</li> </ul>

### 3 동북아역사재단 인권경영 현황

#### [가] 기관 개요

-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 이라 함)은 2006년 5월 19일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의거하여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됨
- 재단은 역사·영토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역사·영토 현안 정책대응 사업, 역사인식 교육·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재단의 조직은 2024년 12월 현재 정책기획관, 감사관과 연구정책실, 독도실, 교육홍보실, 운영관리실 등 2관, 4실, 4연구소, 1체험관, 5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단은 전문과 신뢰, 시의적절과 실용, 확산과 공유, 공정과 상식을 핵심가치로 정하고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국민인 신뢰하는 동북아역사·영토 연구와 정책의 중심”을 비전으로 삼아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비전전략체계도>



## [나] 기관 인권경영 추진

### □ 인권경영 추진

- 재단은 2018년 인권경영이행계획을 제출하였으며, 2019년 인권경영 선언문, 2020년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2021년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2022년 인권정책선언문을 선포하여 대·내외에 임직원의 인권경영 참여의지를 표명하였음
- 재단은 인사담당 부서장(운영관리실장)을 인권경영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중
- 재단은 2021년부터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함

인권경영 도입		인권경영 기반 구축	인권경영 내재화
(2018년)		(2019년~2021년)	(2022년~2025년)
구분	추진시기	주요 내용	
인권경영 체계 도입	2018년	• 인권경영이행계획제출 및 인권경영 담당부서 지정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역사재단 인권경영 선언문 보고('19.5.28)</li> <li>• 직원 워크숍 통해 전 직원 공유</li> <li>• 갑질 근절방안 연간계획 수립</li> <li>• '상호존중의 날'(매월 11일) 지정 운영 개시</li> <li>• 표준 신고시스템 구축</li> </ul>	
인권경영 기반 구축	2020년	• 동북아역사재단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20.12.16)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위원회 구성</li> <li>•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li> <li>•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1회)</li> </ul>	
인권경영 내재화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공공기관·공기업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gt;에 따른 조치 계획 수립</li> <li>• 《동북아역사재단 인권경영이행지침》개정('22.12.7)</li> <li>•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권경영선언문'을 인권정책선언문으로 재정비 → 확장된 인권가치 반영</li> <li>• '21년 인권영향평가 권고에 따라 인권경영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1명 위촉 → 인권경영위원회 내실화</li> <li>• 인권경영교육을 법정교육에 포함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여 인권경영에 관한 이해 제고</li> <li>• '21년에 이어 인권영향평가 실시 정례화</li> </ul>	

## 제2장

---

### 인권영향평가 실시

# 1 인권영향평가 실시개요

## □ 주체 및 범위

○ 평가기간 : 2024. 10. 31. ~ 2024. 12. 20.

- 2024. 11. 6. : 인권영향평가 착수보고회(대면)
- 2024. 11. 18. : 인권영향평가 지표 교육 및 인권 경영 교육(대면)
- 2024. 11. ~ : 내부 자체평가 시행
- 2024. 12. 9. : 인권영향평가 외부전문위원 현장실사(대면)
- 2024. 12. 16. : 현장실사 보고서 제출
- 2024. 12. 20. : 최종 보고서 제출

○ 평가 주체

- (내부) 동북아역사재단 : 주요 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 담당자 평가
- (외부) 한국경영인증원 :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및 분석을 진행

○ 평가 범위 : 동북아역사재단 주요 사업

- (주요 사업) 재단의 ‘교육연수팀 운영사업’, ‘콘텐츠 운영사업’ 수행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실시

○ 평가목적 :

- 기관의 주요사업이 학생, 교원, 직원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인권리스크,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인권경영 이행 수준 진단
-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예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인권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권 존중 경영에 기여

## □ 인권영향평가 실시 가이드<sup>1)</sup>

- 인권영향평가란 기관이 끼치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방지·완화하며, 이러한 노력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포괄적 절차를 뜻함.
  - 포괄적 절차에는 실재적·잠재적 인권리스크에 대한 평가, 그 결과를 기관 운영과 활동 전반에 반영하고 실천하는 과정,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이 모든 절차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인권리스크는 통상적 ‘리스크 관리’에서 전제하는 재무적 성과와 관련된 위험성 외에 기업의 운영과 활동이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위험성을 내포함.
- 기관은 적절한 인권 실사를 수행함으로써 ①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② 기관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③ 효과적인 인권실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④ 우호적인 기업평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⑤ 인권침해 및 차별을 야기하거나 연루되지 않는 한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⑥미래의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인권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기관의 규모 및 가용자원, 기관이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인권리스크의 수준 및 심각성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각 기관은 현실 가능한 선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로드맵에 따라 실시하기를 권장함.
- 인권영향평가는 일시적인 절차가 아니라, 기관의 인권경영과 책임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연속적이고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함.

1) 2019년도 ‘인권경영 표준지침’ 개발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의 인사실사 과정과 절차 가이드를 재 정리함.

## □ 평가 방법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 환경분석 → 체크리스트(안) 작성 → 체크리스트 검토·확정  
→ 인권영향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제출 → 경영진 심의 → 인권리스크 방지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서 제시한 지표와 원칙, 사례를 참고하여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별로 객관적 증빙자료와 평가기준을 표준화하였으며, 표준화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제공하여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최소화함.
- 인권경영 추진 담당자 및 관리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표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평가방법에 대하여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운영 지표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평가지표를 확정함.
- 내부 자체평가를 거친 후 외부 전문가의 현장실사를 통해 “예”로 응답한 지표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보완필요”, “아니오” 답변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개선과제 도출 중점)
- 인권영향평가 전담부서 ‘운영관리실’의 주도 하에 현장평가 결과를 인권경영 관련 부서에 배포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수정의견을 반영함.
- 최종 취합된 진단 결과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진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함.

## □ 중대성 평가

- 2022년부터 인권영향평가 수행 시 중대성 평가 과정이 추가되었으며, 식별된 여러 인권 이슈 중에서 관련 실태조사, 이해관계자의 복잡성과 다양성, 인권영향 수준, 위법 여부, 침해의 심각성(예컨대 생명·신체와 관련한 침해는 재산에 대한 침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피해자의 수, 피해의 사후적 구제 가능성, 국가정책, 기업의 업종, 피해 발생 장소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대처할 기관의 주요 인권 이슈를 도출함.

<중대성 평가방법>

요소	척도	판단기준
이행 수준	5	인권영향평가체크리스트 이행을 70% 이상
	4	인권영향평가체크리스트 이행을 80% 이상
	3	인권영향평가체크리스트 이행을 90% 이상
	2	인권영향평가체크리스트 이행을 95% 이상
	1	인권영향평가체크리스트 이행을 100%
영향 심각도*	5	매우 심각한 영향(EXTREME)
	4	매우중대(HIGH)
	3	중대(MEDIUM)
	2	보통(LOW)
	1	경미(VERY LOW)
발생 가능성**	5	확실(EXTREME)
	4	높음(HIGH)
	3	보통(MEDIUM)
	2	낮음(LOW)
	1	희박(VERY LOW)

- 이행 수준은 원칙적으로 인권영향평가결과 점수산정방식으로 이행률을 계산하여 반영하고, 관련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평가
- 영향 심각도와 발생 가능성은 인권영향전문평가단(또는 인권경영위원회) 및 기관 내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
- 주요 이슈는 총점 11점 이상으로 선정

\* 영향 심각도

등급	정의	구분	내 용
5	매우 심각한 영향 (EXTREME)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대한 신뢰와 상실 등 조직의 계속성에 의문을 가질만한 매우 심각한 영향
4	매우 중대 (HIGH)	일반사항	부정적 영향심각도가 회사 업무 또는 사업성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특별관리를 실행할 필요가 있는 수준 (사업부 정리 및 구조조정)
		이미지 평판	Major 매체에 보도되고, 1년 이상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며, 주기적으로 부정적인 사례로 평가됨
		재정 손실	매출 손실이 사업계획 대비 5% 이하 감소
		이해관계자 영향	상당한 이해관계자의 손실 복구 비용 발생 및 회사 미래 성장에 심각한 위협 발생할 수 있음
3	중대 (MEDI UM)	일반사항	부정적 영향 심각도가 회사 업무 또는 사업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일반적 운영관리 이외에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준
		이미지 평판	지역 여론의 관심이 발생하고 제품 및 기업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1년 이내로 지속될 수 있음
		재정 손실	매출 손실이 사업계획 대비 2% 이하 감소
		이해관계자 영향	상당한 이해관계자의 손실 복구 비용 발생 및 회사 미래 성장에 일부 위협 발생할 수 있음
2	보통 (LOW)	일반사항	부정적 영향을 쉽게 완화할 수 있고 제한적 자원과 노력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정도
		이미지 평판	제한적으로 지역 여론의 관심이 발생할 수 있고, 제품 및 기업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재정 손실	매출 손실이 미미하게 발생할 수 있음
		준법영향	소액의 벌금, 경미한 행정처분, 경영상의 과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해관계자 영향	이해관계자의 불만에 대한 약간의 복구 비용 발생 할 수 있음
1	경미 (VERY LOW)	일반사항	부정적 영향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부서 내에서 교육, 의사소통 등으로 관리 가능한 정도
		이미지 평판	지역 여론, 제품 및 회사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재정 손실	매출 또는 순익 손실의 발생이 거의 없음
		준법영향	내부적 조치 및 최소한의 예방책을 요구하는 경고 및 시정명령
		이해관계자 영향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으로 해결 가능한 정도

\*\* 발생 가능성

등급	정 의	내 용
5	확실 (EXTREME)	1. 과거 6개월 이내 발생한 경험이 다수 있음
		2. 현재 및 향후 발생가능성이 지속될 예정임
		3. 발생가능성이 90% 초과
4	높음 (HIGH)	1. 과거 1년내에 발생한 경험 있음
		2. 현재 및 향후 발생가능성이 높음
		3. 발생가능성이 60% 초과~90% 이하
3	보통 (MEDIUM)	1. 과거 3년 내에 발생한 경험 있음
		2. 현재 및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음
		3. 발생가능성이 25% 초과~60% 이하
2	낮음 (LOW)	1. 과거에 3년내에 발생한 경험 없음
		2. 현재 및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음
		3. 발생가능성이 5% 초과~25% 이하
1	희박 (VERYLOW)	1. 과거 5년내에 발생한 경험 없음
		2. 현재 및 향후 발생가능성 거의 없음
		3. 발생가능성이 5% 이하

\*\*\*중대성 평가 수준(5+5+5)

이행수준	발생가능성	영향심각도	총점	수준
5	5	5	15	상
4	4	4	14	
3	3	3	13	
3	3	3	12	중
2	2	2	11	
1	1	1	10	
2	2	2	9	중
1	1	1	8	
1	1	1	7	
1	1	1	6	하
1	1	1	5	
1	1	1	4	
1	1	1	3	
1	1	1	2	
1	1	1	1	하
1	1	1	0	하

## 2 인권영향평가 사업 선정

### □ 주요 사업 선정

- ‘교육연수팀운영사업’, ‘콘텐츠운영사업’

### □ 주요 사업 선정 기준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의하면, 주요사업 선정 시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중요하게 전개하고 있는 고유의 중점 추진사업 여부,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사업 여부를 고려하고, 사업 실행 시 대외 파급 영향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사업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 주요 사업 선정 목적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교육연수팀운영사업’ 과 ‘콘텐츠운영사업’ 의 특성상 사업 수행과정에서 ① 사업의 인권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② 사업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③ 교육생의 인권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등 인권침해 요소를 파악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 주요사업 선정 사유

- ‘교육연수팀운영사업’ 은 재단의 사업담당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피교육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재단의 핵심사업인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과 동북아독도교육연수원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심도가 높음.
- ‘콘텐츠운영사업’ 은 재단이 생산하는 결과물을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리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으며 재단의 핵심사업에 해당함.

### 3 인권영향평가 지표 구성

#### □ 체크리스트 개발 및 확정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재단의 대내외환경 및 중장기전략을 바탕으로 중점 추진사업, 다양한 이해관계자, 지역 이슈 연계성, 파급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주요 사업으로 ‘교육연수팀운영사업’ 과 ‘콘텐츠운영사업’ 을 선정하였으며, 미디어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사업 관련 최근 인권 이슈를 2024년 평가 지표에 추가 반영함.
- 법무부 ‘2019년도 인권경영 표준지침’의 인권실사 가이드를 참고하여 인권경영 6년차에 접어든 재단의 인권경영 시스템 및 문화 정착 단계에 맞춰 현실 가능한 개선과제 도출을 목표로 ‘교육연수팀운영사업’ 과 ‘콘텐츠운영사업’ 사업의 프로세스별 인권경영 체계의 확산, 업무절차 및 과업 이행수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과 인권보호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음.

#### □ 주요사업 세부 항목

연번	사업명	항목	지표수(개)
1	교육연수팀 운영사업	사업의 인권체계	2
		공정운영	6
		교육생의 인권	4

연번	사업명	항목	지표수(개)
2	콘텐츠운영사업	사업의 인권체계	2
		이용자 인권	5
		논리기반강화	5

## □ 주요사업 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 ○ 교육연수팀운영사업

항목	지표	
① 사업의 인권체계	1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은 교육연수팀운영 사업(이하'사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별 인권이슈를 파악하고 있다.
	2	재단은 교육연수사업의 대상과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추고 인권문제에 즉시 대응하고 있다.
② 공정운영	1	지원 시민단체 선발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	시민단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역량, 사업내용, 추진방법 등의 평가 기준이 명확하며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 가중치를 적절하게 부여하고 있다.
	3	지원사업의 사업실행 계획서 대로 실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환류하고 있다.
	4	시민단체 지원 심사위원단이 극단적인 성향으로 치우치는 구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부 심사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가 있다.
	5	NAHF 아카데미에서는 극단적 성향, 특정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역사인식에서 균형감각을 갖춘 강사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6	지원 시민단체의 예산사용 투명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며 예산사용 규정위반 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③ 교육생의 인권	1	NAHF 아카데미의 수강 정원은 제반 교육 인프라, 교육효과를 감안하여 결정되었다
	2	강사와 교육생간, 교육생 상호 간에 인권침해성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 전 인권 관련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3	탐방연수 시 교육생 및 인솔자 전부의 안전보건을 점검하는 절차가 있으며 안전보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하여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4	NAHF아카데미 교육생의 만족도는 모니터링되어 즉시 아카데미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 콘텐츠운영사업

항목	지표	
① 사업의 인권체계	1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은 콘텐츠운영사업(이하‘사업’)의 핵심 콘텐츠이용자 인권이슈를 파악하고 있다.
	2	재단은 콘텐츠운영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출판물, 간행물 등에 대한 국내외 반응을 접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채널을 갖추고 있다.
② 이용자 인권	1	동북아역사 교양총서는 독자들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화된 방안이 있다.
	2	영문저널 발간 사업에서 영문원고 투고 시 영문 작성원칙 외에 중요한 영역 표현의 통일, 오타자 확인 등 원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투고 전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3	도서관 관리운영사업 > 국내외 동북아 역사 및 영토 관련 자료 구입 시 다양한 주장을 포함하는 책자, 간행물을 수집하고 있다.
	4	도서관 관리운영사업 > 도서관 자료의 접근성 및 보존성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5	역사정보 디지털플랫폼 [동북아역사넷] 의 해킹 방지 등 보안성강화 조치를 하고 있다
③ 논리기반 강화	1	콘텐츠 내용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는 논리가 제시되며 억지주장을 배제한다
	2	번역서 발간시 하나의 한글 단어에 여러가지의 외국어 표현을 방지하여 번역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3	학술서, 정기간행물 등의 출판물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글로벌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	학술지의 등록 및 배포 전, 출처 미표기, 확인되지 않은 출처 및 근거, 억지 논리로 우리의 모든 주장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없는 지를 검증하고 있다.
	5	종이 책자의 발행 및 배포를 억제하고 E-BOOK 등 디지털화를 통해 환경보호 노력을 하고 있다

##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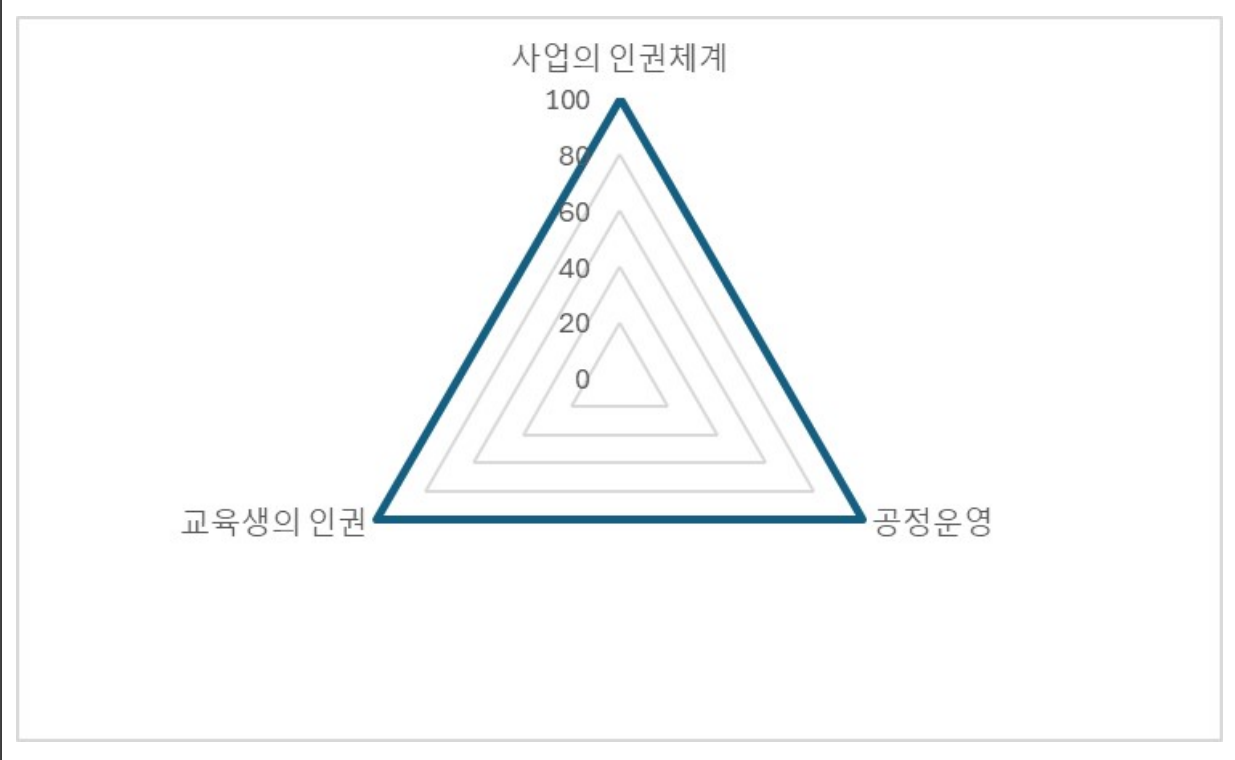
---

### 인권영향평가 결과분석

# 1 교육연수팀 -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 **종합 점수 : 100%** (총 24점 중 24점 획득)

▶ 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 100%로 우수한 상태



No	항목	점수			
		배점	조정배점	득점	달성률
1	사업의 인권체계	4	4	4	100%
2	공정운영	12	12	12	100%
3	교육생의 인권	8	8	8	100%
<b>총점</b>		<b>24</b>	<b>24</b>	<b>24</b>	<b>100%</b>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점검 집계결과

○ 총 12개 지표 중 예 12개, 아니오 0개, 보완필요 0개, 정보없음 0개, 해당없음 0개로 집계됨

No	항목	평가결과					계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사업의 인권체계	2	0	0	0	0	2
2	공정운영	6	0	0	0	0	6
3	교육생의 인권	4	0	0	0	0	4
합 계		12	0	0	0	0	12

결과 그래프	점수표															
<p>교육연수팀운영사업 인권영향평가 종합점수</p> <p>교육생의 인권: 100</p> <p>공정운영: 100</p> <p>사업의 인권체계: 100</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항목</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사업의 인권체계</td> <td>100</td> </tr> <tr> <td>2</td> <td>공정운영</td> <td>100</td> </tr> <tr> <td>3</td> <td>교육생의 인권</td> <td>100</td> </tr> <tr> <td colspan="2">평균</td> <td>100</td> </tr> </tbody> </table>	No	항목	계	1	사업의 인권체계	100	2	공정운영	100	3	교육생의 인권	100	평균		100
No	항목	계														
1	사업의 인권체계	100														
2	공정운영	100														
3	교육생의 인권	100														
평균		100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역사재단은 교육연수 사업과 시민단체 지원사업에서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음.</li> <li>•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도입 및 '찾아가는 교육' 등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며, 심사 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됨.</li> <li>• 또한, 적정한 수강 정원 설정, 인권침해 방지 조치, 안전 관리 강화,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와 강사 평가를 활용한 운영 개선 등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있다고 평가됨.</li> </ul>

□ 주요사업 각 분야별 평가결과

◆ 분야 1. 사업의 인권체계(2개 항목)

No	항목
1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은 교육연수팀운영 사업(이하'사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별 인권이슈를 파악하고 있다.
2	재단은 교육연수사업의 대상과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추고 인권문제에 즉시 대응하고 있다.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연수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피교육생과 시민단체임. 교육 대상 모두가 중요하지만, 예산과 접근성의 제한으로 교사와 학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시민과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음.</li> <li>서울 및 경기 지역 중심으로 집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편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교육 도입으로 지역 간 교육 기회 격차가 완화되고 있음.</li> <li>교육 신청 시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자발적 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단(교육연수팀)은 메일 계정 운영과 담당자 개인 휴대폰 번호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지원하고 있음.</li> </ul>
평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북아역사재단의 교육연수 사업은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을 우선순위로 두어 예산과 접근성 제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li> <li>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교육 도입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했으나, 여전히 서울·경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li> <li>교육신청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원활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li> </ul>
권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고의견 없음</li> </ul>

◆ 분야 2. 공정운영(6개 항목)

No	항 목
1	지원 시민단체 선발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	시민단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역량, 사업내용, 추진방법 등의 평가기준이 명확하며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 가중치를 적절하게 부여하고 있다.
3	지원사업의 사업실행 계획서 대로 실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환류하고 있다.
4	시민단체 지원 심사위원단이 극단적인 성향으로 치우치는 구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부 심사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가 있다.
5	NAHF 아카데미에서는 극단적 성향, 특정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역사인식에서 균형감각을 갖춘 강사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6	지원 시민단체의 예산사용 투명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며 예산사용 규정위반 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북아역사 재단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 규칙」(이하 규칙) 을 준용하여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불공정 사례가 없음.</li> <li>단체의 역량, 사업내용, 추진방법, 기대효과, 예산 등의 평가기준을 포함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선정함.</li> <li>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의 주관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으나, 심사 기준 내에서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활용해 객관적인 평가를 보장하고 있음</li> </ul>
평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북아역사재단은 지원 시민단체 선발 및 사업 실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사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li> </ul>
권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고의견 없음</li> </ul>

### ◆ 분야 3. 교육생 인권(4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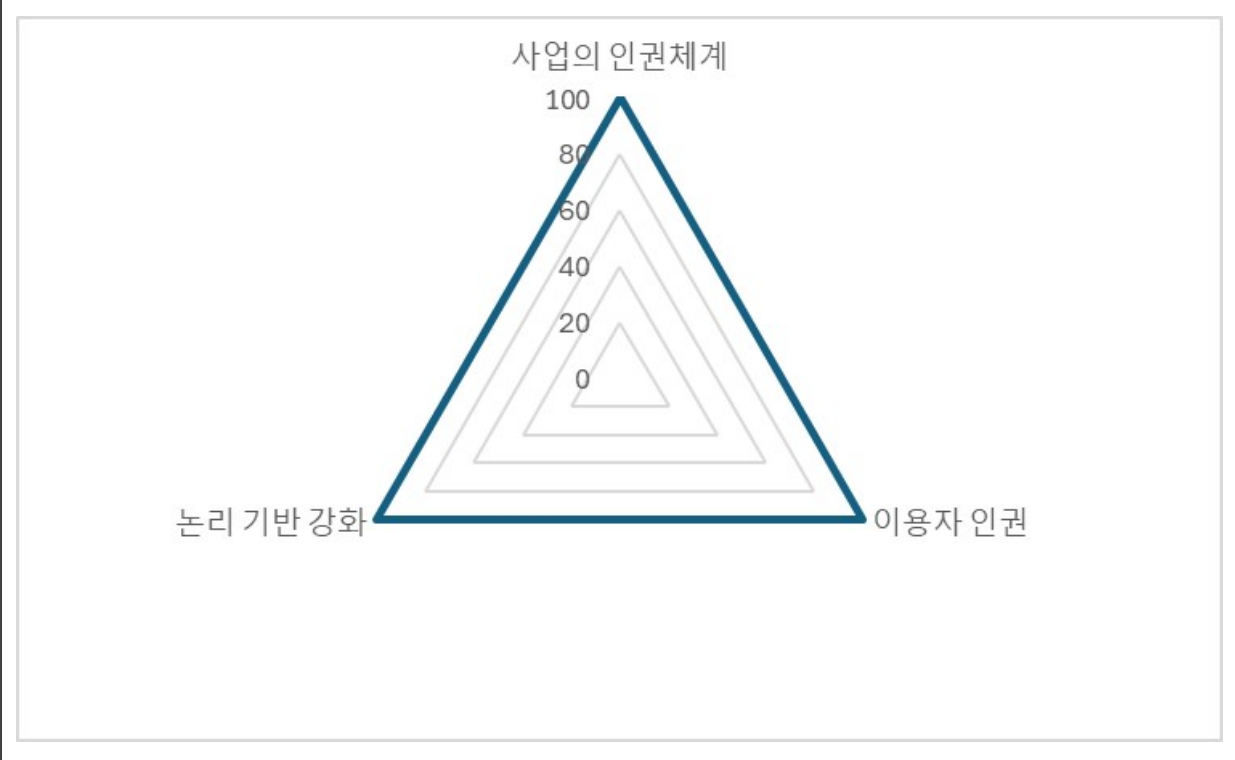
No	항목
1	NAHF 아카데미의 수강 정원은 제반 교육 인프라, 교육효과를 감안하여 결정되었다.
2	강사와 교육생간, 교육생 상호 간에 인권침해성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 전 인권 관련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3	탐방연수 시 교육생 및 인솔자 전부의 안전보건을 점검하는 절차가 있으며 안전보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하여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4	NAHF아카데미 교육생의 만족도는 모니터링되어 즉시 아카데미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HF 아카데미의 수강 정원은 교육 과정별로 연수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온라인 교육은 수강 인원 제한이 없으나, 집합교육은 20-40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음.</li> <li>• 강사와 교육생간, 교육생 상호 간에 인권침해성 발언이나 행동이 없도록 교육 전 인권 관련 주의사항을 구두로 안내하고 있음.</li> <li>• 강사와 교육생 간 강의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토론을 통해 해결하며, 비방이나 모욕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li> <li>• 탐방연수 시 교육생 및 인솔자의 안전을 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하고, 미성년자(중·고등학생) 대상 탐방연수의 경우 안전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동행하도록 하고 있음.</li> <li>• 교육 종료 후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차기 교육에 반영하며, 특히 강사 평가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음.</li> <li>• 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 경비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교육 출장비 지원, 관련 공문 발송 등)</li> </ul>
평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HF 아카데미는 교육 인프라와 교육 효과를 고려하여 수강 정원을 적절히 설정하고 있으며, 심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결정되고 있음.</li> <li>• 강사와 교육생 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견 충돌 상황에서도 토론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li> <li>• 탐방연수 시 교육생 및 인솔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험 가입 및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의 동행 등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li> <li>•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 개선에 반영하고 있으며, 강사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피드백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li> </ul>
권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준수 향상을 위한 권장의견) 탐방연수의 안전보건 조치는 안전보건여행자보험 가입으로 지표를 만족하고 있지만, 탐방연수 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제세동기, 구호kit를 준비하고 경우에 따라 간호사를 대동하는 등, 탐방연수 시 안전보건 조치를 현수준 보다 강화방안을 권장함.</li> </ul>

## 2 콘텐츠운영사업 -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 **종합 점수 : 100%** (총 24점 중 24점 획득)

▶ 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 100%로 우수한 상태



No	항목	점수			
		배점	조정배점	득점	달성률
1	사업의 인권체제	4	4	4	100%
2	이용자 인권	10	10	10	100%
3	논리 기반 강화	10	10	10	100%
<b>총점</b>		<b>24</b>	<b>24</b>	<b>24</b>	<b>100%</b>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점검 집계결과

○ 총 12개 지표 중 예 12개, 아니오 0개, 보완필요 0개, 정보없음 0개, 해당없음 0개로 집계됨

No	항목	평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계
1	사업의 인권체계	2	0	0	0	0	2
2	이용자 인권	5	0	0	0	0	5
3	논리 기반 강화	5	0	0	0	0	5
합 계		12	0	0	0	0	12

결과 그래프	점수표															
<p>콘텐츠운영사업 인권영향평가 종합점수</p> <p>A horizontal bar chart titled '콘텐츠운영사업 인권영향평가 종합점수'. The x-axis represents the score from 0 to 100 in increments of 20. There are three bars, all of which are at the 100 mark. The bars are labeled '논리 기반 강화', '이용자 인권', and '사업의 인권체계' from top to bottom.</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항목</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사업의 인권체계</td> <td>100</td> </tr> <tr> <td>2</td> <td>이용자 인권</td> <td>100</td> </tr> <tr> <td>3</td> <td>논리 기반 강화</td> <td>100</td> </tr> <tr> <td colspan="2">평균</td> <td>100</td> </tr> </tbody> </table>	No	항목	계	1	사업의 인권체계	100	2	이용자 인권	100	3	논리 기반 강화	100	평균		100
No	항목	계														
1	사업의 인권체계	100														
2	이용자 인권	100														
3	논리 기반 강화	100														
평균		100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역사재단은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강화하며, 국민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콘텐츠 전달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음.</li> <li>• 번역물 품질 검토와 자료 디지털화를 통해 접근성과 보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종이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음.</li> <li>• 데이터 보안 및 사용자 피드백 반영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이루고 있으며,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등 신뢰도 높은 콘텐츠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li> </ul>

□ 주요사업 각 분야별 평가결과

◆ 분야 1. 사업의 인권체계(2개 항목)

No	항목
1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은 콘텐츠운영사업(이하'사업')의 핵심 콘텐츠이용자 인권 이슈를 파악하고 있다.
2	재단은 콘텐츠운영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출판물, 간행물 등에 대한 국내외 반응을 접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채널을 갖추고 있다.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이해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확장하면 전세계인이라고 할 수 있음. 인권이슈는 “재단이 생산하는 결과물을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리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li> <li>• 예를 들어, &lt;정책홍보 영상 제작&gt; 사업의 영상 기획 및 제작시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어 내용의 오류를 막기 위해 관련 분야의 재단 연구위원의 검수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음.</li> <li>• 재단은 콘텐츠 운영사업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출판물과 간행물에 대한 국민 반응을 모니터링함.</li> <li>• 댓글창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유튜브, 블로그는 좋아요 클릭수, 조회수를 통해 콘텐츠에 대한 반응을 확인함.</li> </ul>
평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역사재단은 콘텐츠 운영사업에서 핵심 이해관계자인 국민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콘텐츠 전달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검증된 자료를 통해 신뢰성과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음.</li> </ul>
권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고의견 없음.</li> </ul>

## ◆ 분야 2. 이용자 인권(5개 항목)

No	항 목
1	동북아역사 교양총서는 독자들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화된 방안이 있다.
2	영문저널 발간 사업에서 영문원고 투고 시 영문 작성원칙 외에 중요한 영역 표현의 통일, 오타자 확인 등 원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투고 전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3	도서관 관리운영사업 > 국내외 동북아 역사 및 영토 관련 자료 구입 시 다양한 주장을 포함하는 책자, 간행물을 수집하고 있다.
4	도서관 관리운영사업 > 도서관 자료의 접근성 및 보존성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5	역사정보 디지털플랫폼 [동북아역사넷] 의 해킹 방지 등 보안성강화 조치를 하고 있다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양총서는 논문 보다는 읽기 쉽지만 소설처럼 재미있지는 않으며, 담담한 문체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음.</li> <li>• 교양총서 집필지침에 따라 일반 단행본과 차별화된 편찬의 방향성을 제시함</li> <li>• 교양총서의 독자층을 확대하기 위하여 독후감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참여자 대부분이 일반 시민들이며 그 중에는 고교생도 있을 정도로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음.</li> <li>• 국가명, 지명, 인명과 같은 고유명사는 매뉴얼에 따르며, 국가별, 지역별 다양한 독자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내용 구성을 통해 독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음.</li> <li>• 영문저널의 경우, 다양한 투고자의 글을 신기 때문에 영역의 차이에 대해서 각자의 표현을 존중하고 표현의 통일을 강제할 수 없지만, 재단에서 출판하는 서적의 용어는 통일성과 정확성을 유지함.</li> <li>• 특정인, 특정 성향의 자료를 구입하라는 지침은 없으며, 독도 및 위안부 문제의 경우에도 우리 주장에 반하는 주장을 담은 자료 또한 구입해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내고 있음. 예를 들어, [반일종족주의] 내용에 찬반의견을 내는 다양한 의견(서적, 논문, 수필 등)을 수렴하는 것임.</li> <li>• 도서관 자료의 접근성을 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자료소개 검색이 가능하고 자료 전체는 재단 도서관을 방문토록 하고 있음.</li> <li>• 도서관 자료의 보존성을 위하여 습도, 온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료의 파손,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하고 있음.</li> <li>•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탐지 장비를 통해 동북아역사넷의 서버 보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웹취약점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음.</li> <li>• 기관 자체적으로는 방화벽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접근에 대한 상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보안 상 보고서 미공개)</li> </ul>
----------	--

<p>평가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역사재단은 독자가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검증과 전문가 리뷰를 수행하고 있음.</li> <li>• 또한, 정기간행물과 디지털 콘텐츠를 PDF 및 e-book 형태로 보존하여 자료 접근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와 자료 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도 높은 콘텐츠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데이터 보안과 사용자 피드백 반영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고 있음.</li> </ul>
<p>권고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고의견 없음</li> </ul>

◆ 분야 3. 논리기반 강화(5개 항목)

No	항목
1	콘텐츠 내용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는 논리가 제시되며 억지주장을 배제한다
2	번역서 발간시 하나의 한글 단어에 여러가지의 외국어 표현을 방지하여 번역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3	학술서, 정기간행물 등의 출판물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글로벌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	학술지의 등록 및 배포 전, 출처 미표기, 확인되지 않은 출처 및 근거, 억지 논리로 우리의 모든 주장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없는 지를 검증하고 있다.
5	종이 책자의 발행 및 배포를 억제하고 E-BOOK 등 디지털화를 통해 환경보호 노력을 하고 있다.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정책홍보 영상 제작 사업&gt; 진행시 재단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영상위원회의 검수과정을 거쳐 객관적 증거를 통한 정확한 논리를 제시하고 역사적 사실, 이론 등 다양한 억지 주장 등을 배제함.</li> <li>• 영상물 제작 시 용역사에서 제안된 내용을 영상위원회의 3~4회의 논의를 통해 수정하거나 수용 여부를 결정하며, 낱말 하나까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음.</li> <li>• 번역서 발간 시 제작사양서와 단어 통일 지침을 업체에 제공함.</li> <li>• 재단 필수 배포처인 해외 한국학연구기관에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외 학술단체에도 비정기적으로 홍보를 진행함.</li> <li>• 해외 학술단체 홍보는 유료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월간 비용에 따라 팝업창의 순서와 위치가 조정됨.</li> <li>• 동북아역사논총은 간행 및 심사규정에 따라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며, 영토해양연구 간행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지표3-4 (1),(2) 동북아역사논총, 영토해양연구 간행 및 심사내규)</li> <li>• 저작권 관련 사항은 사전 검토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필요 시 보상이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현재까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음.</li> <li>•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은 홈페이지에 PDF와 e-book 형태로 게재하고 있음.</li> <li>• 정기간행물 발행 부수는 기존 500부에서 300부로 축소하였으며, 향후 추가 축소를 검토 중임.</li> </ul>
평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제작 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구성하고 억지 주장을 배제하여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됨.</li> <li>• 번역물의 경우 단어 통일과 품질 검토를 통해 번역의 정확성을 확보하며, 정기간행물과 단행본은 PDF 및 e-book 형태로 디지털화하여 자료의 접근성과 보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종이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음.</li> <li>•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상 조치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데이터 보호와 품질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도 높은 콘텐츠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li> </ul>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고의견 없음</li> </ul>

## 제4장

---

### 인권경영 주요 개선 과제

## □ 각 평가항목별 권고의견

- ‘교육연수팀 운영사업’과 ‘콘텐츠운영사업’ 모두 모든 항목이 ‘예’로 권고의견 없음.

## □ 주요 인권이슈 선정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인권이슈 없음.

### <중대성 평가결과>

인권영향평가 항목	인권영향평가결과					중대성평가결과			
	지표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이행율	이행 수준	영향 심각도	발생 가능성	합계
<b>교육연수팀 운영사업</b>									
1. 사업의 인권체계	2	2	0	0	100%	1	2	2	5
2. 공정운영	6	6	0	0	100%	1	3	2	6
3. 교육생 인권	4	4	0	0	100%	1	3	2	6
<b>콘텐츠운영사업</b>									
1. 사업의 인권체계	2	2	0	0	100%	1	2	2	5
2. 이용자 인권	5	5	0	0	100%	1	3	3	7
3. 논리 기반 강화	5	5	0	0	100%	1	3	2	6

## □ 주요 개선과제

- 탐방연수의 안전보건 조치는 안전보건여행자보험 가입으로 지표를 만족하고 있지만, 탐방연수 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제세동기, 구호kit를 준비하고 경우에 따라 간호사를 대동하는 등, 탐방연수 시 안전보건 조치를 현수준 보다 강화방안을 권장함.